

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

□ 설치 근거

- 도로법 제2조 도로의 부속물 또는 제30조 공공목적의 공원시설(휴양시설)

□ 설치 기간 : 혹서기(6 ~ 10월)

□ 설치 위치 :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

- 대기시간이 길어 그늘이 필요한 횡단보도
 - 왕복 6차로 보행자 신호시간 약 27초 소요

□ 설치 준수 사항

- 토지 고정 기둥으로 도로점용 최소화하여 보행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함
 - 장애인 편의 증진법등 타 법령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
(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」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」 「장애인 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」)
- 버스등 대형차 운전자 시거 확보에 문제가 없는 위치
 -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관서등과 사전 협의
- 태풍 등으로 인한 위험상황시 누구나 쉽게 접을 수 있는 '접이식 파라솔'로 혹서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탈착하여 보관할수 있는 탈부착식 구조
- 주변과의 조화를 위하여 자치구별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결정

□ 관리 방안

- 그늘막의 설치·관리 등 총괄부서는 자치구 폭염대책 담당부서로 지정하며, 구별 실정에 맞게 관리자 지정 운영

【 예시 】

- 평일·주간 : 관할 동 주민센터 담당 지정 관리
 - 공휴일·야간 : 통장, 인근점포주, 직능단체회원 등 관리
- 기상상황(강풍, 호우, 태풍주의보 발표)에 따라 필요시 그늘막을 접어 관리하고, 폭염 운영기간 종료 후 자치구 실정에 맞게 관리
- 도로부속물의 경우 광고물등 표시 금지 (민간 참여 배제)
 -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(20조1항5호)
- 안전사고 대비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